

「구미생활문화센터 관리·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조성된 구미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과 수준 높은 교육 및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미생활문화센터의 관리·운영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 : 구미생활문화센터 관리·운영
- 추진근거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- 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1조
 - 3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
 - 4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, 제19조의5

- 5) 「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」 제21조
- 6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7) 「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8) 「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1조

○ 위탁사무 : 구미생활문화센터 관리, 운영

○ 시설개요

- 1) 시 설 명 : 구미생활문화센터
- 2) 소 재 지 : 구미시 구미중앙로15길 20(원평동)
- 3) 규 모
 - 대지면적 : 1,091㎡
 - 연 면 적 : 1,291.83㎡ (지하 1층~지상 3층)

4) 층별시설

층별	연면적	시설내용
지하 1층	160.87㎡	기계실, 전기실
1층	235.2㎡	마주침공간, 사무실
2층	573.02㎡	다목적홀, 동호회 연습실, 미술공작실, 방음연습실
3층	322.74㎡	작은도서관

○ 위탁기간 : 2024년 11월 1일 ~ 2029년 10월 31일(5년)

○ 수탁자 선정방식 : 수의계약[(재)구미문화재단]

○ 위탁조건 : 위·수탁 협약 체결에 의함

○ 소요예산(산출근거) : 연352백만원 정도(2024년 기준)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운영비	사업비	비고
352	136	198	18	

4. 참고사항

재 산 현 황

구 분			건 물		토 지		비 고
			동 수	연면적(m²)	필 지	면적(m²)	
합 계			1	1,291.83	1	1,091	
공 유 재 산	행 정 재 산	공용 재산					
		공공용 재산	1	1,291.83	1	1,091	
		기업용 재산					
		보존용 재산					
	일반 재산	행정재산 외 모든 공유재산					

위탁시설 현황

<건축물>

층별	연면적	건축물 내역(면적 m²)
지하1층	160.87m²	기계실(110.5), 전기실(30.92), 계단실(19.45)
1층	235.2m²	계단실(19.27), 화장실(34.24), 장애인화장실(8.28), 방풍실(9.9), 마주침공간(112.77), 사무실(28.33), 탕비실(3.71), 통신실(18.7)
2층	573.02m²	계단실(19.32), 화장실(29.32), 장애인화장실(4.11), 홀(84.64), 다목적홀(145.25), 동호회 연습실(52.8), 수납창고(9.88), 부속실(9.62), 미술공작실(69.88), 방음연습실(36.75), 데크(111.45)
3층	322.74m²	계단실(19.32), 화장실(29.32), 장애인화장실(4.11), 홀(14.68), 작은도서관(255.31)

위치도 및 조감도

□ 위치도



☐ 조감도

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구미시 원평동에 준공된 구미생활문화센터의 관리·운영을 (재)구미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구미 시민의 문화활동 및 문화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문화예술 관련 체험·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미생활문화센터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구미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각화된 프로그램 선정 및 시민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 선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, 수강생의 선정과 장소의 대여 등 투명한 운영과 시설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철저한 지도·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